

1. 住家建設促進法 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539號 1993. 12. 14

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
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1에 정하는 바
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

탁수수료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
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급하
고 있는 바, 이 경우 위탁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전문기관의 원가분석의 결과에 따라
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〈건설부제공〉

[별표 1]

국민주택기금운용·관리사무위탁수수료금액(제12조의2제1항 관련)

연 도 별	월 별 위탁 수수료
1989. 4.10부터 1989. 12. 31까지	국민주택기금의 매일의 자산중 대출금계정의 금액에서 관리자금을 뺀 금액에 1만2천분의 11.7을 곱한 금액을 1월동안 평균한 금액
1990. 1. 1부터 1990. 12. 31까지	국민주택기금의 매일의 자산중 대출금계정의 금액에서 관리자금을 뺀 금액에 1만2천분의 9.8을 곱한 금액을 1월동안 평균한 금액
1991. 1.1부터 1991. 12. 31까지	국민주택기금의 매일의 자산중 대출금계정의 금액에서 관리자금을 뺀 금액에 1만2천분의 8.5를 곱한 금액을 1월동안 평균한 금액
1992. 1. 1부터 1992. 12. 31까지	국민주택기금의 매일의 자산중 대출금계정의 금액에서 관리자금을 뺀 금액에 1만2천분의 7.5를 곱한 금액을 1월동안 평균한 금액
1993. 1. 1이후	부표의 산정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

[부표]

위탁 수수료 산정 표

수 수 료	금 액
위탁 수수료	조성수수료·운용수수료 및 관리수수료를 합한 금액
조 성 수 수 료	<p>다음의 청약저축수수료·채권수수료 및 복권수수료를 합한 금액</p> <p>가. 청약저축수수료 $(181,946\text{천 원} + 1,179\text{원} \times \text{계좌수}) \times (1.038)^n$</p> <p>나. 채권수수료 $(503,211\text{천 원} + 1,809\text{원} \times \text{매수}) \times (1.038)^n$</p> <p>다. 복권수수료 $(155,212\text{천 원} + 36.2\text{원} \times \text{매수}) \times (1.038)^n$</p>

수 수 료	금 액
운 용 수 수 료	<p>다음의 대출수수료 및 대환수수료를 합한 금액</p> <p>가. 대출수수료 $(76,241천 원 + 291,322원 \times 건수) \times (1.038)^n$</p> <p>나. 대환수수료 $(357,476천 원 + 101,669원 \times 건수) \times (1.038)^n$</p>
관 리 수 수 료	<p>다음의 원리금수납수수료 및 연체관리수수료를 합한 금액</p> <p>가. 원리금수납수수료 $(49,145천 원 + 656원 \times 계좌수) \times (1.038)^n$</p> <p>나. 연체관리수수료 $(36,846천 원 + 395원 \times 계좌수) \times (1.038)^n$</p>

※ 비고

1. 위 표에서의 “계좌수”는 월말잔고계좌수를 말함.
2. 위 표의 채권수수료에서의 “매수”는 당해 월의 제1종·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매수와 상환매수를 합한것을 말하고, 복권수수료에서의 “매수”는 당해 월의 주택복권의 판매매수를 말함.
3. 위 표의 대출수수료 및 대환수수료에서의 “건수”는 당해 월의 근로복지주택자금, 사원임대주택자금, 임대주택자금, 분양주택자금, 다세대주택자금, 다가구주택자금,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, 조합주택자금, 조립식주택자금 및 골재비축자금의 대출 및 대환발생건수를 말함.
4. 위 표에서의 “n”은 1993년을 1로 하여 매년 1을 더한 수를 말함.

가는길 즐겁게, 오는길 즐겁게